

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(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등)  
(경유)  
제목 **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**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의 지역: 3단계)를 유지하면서 연장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이에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판매업자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,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, **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〈 주 요 내 용 〉

- 대상시설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, 후원방문, 방문판매, 미신고미등록 포함) 집합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2021. 10. 4.(월) 0시 ~ 2021.10.17.(일) 24시
- 적용단계 :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
- 주요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4단계 방역수칙 의무화



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0/02 서병철  
협조자

붙임 특수판매업체 방역조치 고시 1부. 끝.

#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4일  
서울특별시장

## 1.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**2021년 10월 4일(월) 0시 ~ 2021년 10월 17일(일) 24시**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4단계 방역수칙 의무화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**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**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b>① 방역수칙 준수</b>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<b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b>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<b>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</b>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<b>④ 마스크 착용</b>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<b>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</b> ■ 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<b>⑥ 손씻기</b>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<b>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</b>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	<b>⑧ 환기하기</b>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<b>⑨ 소독하기</b>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<b>⑩ 기타</b>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<b>★ 시설 내 공용 장소</b>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추가 적용 수칙	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

**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**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</li> <li>▲대화 금지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</li> <li>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</li> </ul>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</li> <li>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li>▲ 사용 전/후 손씻기</li> </ul>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손소독제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</li> </ul>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</li> <li>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</li> <li>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</li> </ul>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</li> <li>▲ 대화 자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 대화 자제</li> </ul>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</li> </ul>
민원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</li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/ul>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의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1. 10.4.(월) 0시 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제3항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